

#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거제시 고시 제2006-107호(2006.11.21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의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29.

## 거 제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,송진포리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
  - 명 칭 :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사 업 명	도시계획 결정 (단위:㎡)	사업시행 규모 (단위:㎡)	비고
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	936,155	936,155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 명 : 드비치골프클럽 주식회사 대표 최병호
  - 주 소 :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77-3번지
5. 사업기간
  - 당 초 : 2006.11 ~ 2011.12.31
  - 변 경 : 2006.11 ~ 2012.03.31
6. 관계도면 : “실음생략” (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, ☎055-639-3738)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, 권리자의 성명,주소 : “실음생략”